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6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박홍배

정준호 • 이학영 • 윤종군

한민수・박 정・김태년

박해철 • 맹성규 • 윤준병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3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거운동) ①·② (생 략)	거운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	③		
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			
터 <u>3일</u>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u>30일</u>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u><신 설></u>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		
	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이의신청에 관한 사		
	<u>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u>		
	<u>따른다.</u>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u>⑥</u>		
삭제 요청, <u>이의신청, 그 밖에</u>	<u>그 밖에 필요한</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u>사항은</u>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